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932
----------	-------

발의연월일 : 2026. 8. 31.

발 의 자 : 이달희 · 유용원 · 임종득
임이자 · 김정재 · 서천호
김종양 · 이만희 · 김상훈
김재섭 · 고동진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각 1인의 상임위원을 두고 이들에게 보수를 지급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위원장에 의한 책임감 있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임으로 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들은 비상임으로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시·도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상임으로 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들을 비상임으로 하여, 위원장에 의한 책임감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5조제1항 등).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둔다”를 “두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상임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各級選舉管理委員會의 委員長은”을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으로, “選舉管理委員會委員중에서 互選한다”를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區·市·郡選舉管理委員會와”를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와”로, “副委員長”을 “부위원장”으로, “選舉管理委員會委員중에서 互選한다”를 “선거관리위원회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區·市·郡選舉管理委員會는”을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으로, “第173條(開票所)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를 “제173조(개표소)제2항에 따라”로, “區·市·郡選舉管理委員會가”를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로, “開票所를”을 “개표소를”로, “選舉管理를”을 “선거관리를”로, “第4條”를 “제4조”로, “委員의 任命”을 “위원의 임명”으로, “第3項의 委員定數에”를 “제3항의 위원정수에”로, “開票所마다 地方法院長”을 “개표소마다 지방법원장”으로, “支院長이”를 “지원장이”로, “法官”을 “법관”으로, “區·市·郡選舉管理委員會 副委員長으로”를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로”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勤務期間, 實費補償 및 委囑節次”를 “근무기간, 실비보상 및 위촉절차”로, “中央選舉管理委員會規則으로”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委員長이 事故가 있을 때에는 常任委員 또는 副委員長이 그 職務를 代行하며 委員長・常任委員・副委員長이 모두 事故가”를 “위원장이 사고가”로, “委員중에서 臨時委員長을 互選하여 委員長의 職務를 代行하게 한다”를 “위원장이 지정하는 상임위원(이하 “지명상임위원”이라 한다) 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지명상임위원・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중에서 임시위원장을 호선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그 보수는 국무위원의 보수와 동액으로 하며,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1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9조제5호 중 “市・道選舉管理委員會”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로, “常任委員인 委員으로서”를 “위원장으로서”로, “해당하거나 常任委員으로서의 勤務上限에 달하였을”을 “해당한”으로 한다.

제12조제2항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앙선거관리위원장, 시·도선거관리위원장 및 상임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임된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시·도선거관리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제5조, 제6조, 제9호 및 제1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5條(委員長) ① 各級選舉管理委員會에 委員長 1人을 <u>둔다</u>. ② <u>各級選舉管理委員會의 委員長은 당해 選舉管理委員會委員 중에서 互選한다</u>. ③ (생 략) ④ <u>區 · 市 · 郡選舉管理委員會와 읍 · 면 · 동선거관리위원회에 副委員長 1人을 두며 당해 選舉管理委員會委員중에서 互選한다</u>. 다만, <u>區 · 市 · 郡選舉管理委員會는 「공직선거법」 第173條(開票所)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하나의 區 · 市 · 郡選舉管理委員會가 2개이상의 開票所를 설치하는 경우의 選舉管理를 위하여 第4條(委員의 任命 및 위촉)第3項의 委員定數에 불구하고 開票所마다 地方法院長 또는 支院長이 추천하</u>	第5條(委員長) ① ----- -----<u>두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 · 도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상임으로 한다</u>. ② <u>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u>. ③ (현행과 같음) ④ <u>구 · 시 · 군선거관리위원회와----- --부위원장----- 선거관리위원회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구 · 시 · 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173조(개표소)제2항에 따라----- -----구 · 시 · 군선거관리위원회가-----개표소를-----선거관리를-----제4조-위원의 임명-----제3항의 위원정수에-----개표소마다 지방법원장-----지원장이-----</u>

는 法官 1人을 당해 區・市・郡選舉管理委員會 副委員長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勤務期間, 實費補償 및 委囑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中央選舉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

⑤ 委員長이 事故가 있을 때에는 常任委員 또는 副委員長이 그 職務를 代行하며 委員長・常任委員・副委員長이 모두 事故가 있을 때에는 委員중에서 臨時委員長을 互選하여 委員長의 職務를 代行하게 한다.

<신 설>

第6條(常任委員) ① 中央選舉管理委員會와 市・道選舉管理委員會에 委員長을 補佐하고 그 命

令을 發한다. 區・市・郡選舉管理委員會 委員長은 區・市・郡選舉管理委員會 副委員長으로 위촉한다. 이 경우 勤務期間, 實費補償 및 委囑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中央選舉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

⑤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이 지명하는 상임위원(이하 “지명상임위원”이라 한다) 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지명상임위원・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중에서 임시위원장을 호선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그 보수는 국무위원의 보수와 동액으로 하며,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1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삭 제>

을 받아 소속 사무처의 事務를
監督하게 하기 위하여 각 1人
의 常任委員을 둔다. 다만, 선
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아니
한 사람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의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② 中央選舉管理委員會의 常任
委員은 委員중에서 互選한다.

③ 市·道選舉管理委員會의 常
任委員은 당해 選舉管理委員會
의 委員중 다음 各號의 1에 해
당하고 選舉 및 政黨事務에 관
한 識見이 풍부한 者중에서 中
央選舉管理委員會가 指名하되
常任委員으로서의 勤務上限은
60歲로 한다.

1. 法官·檢事 또는 辯護士의
職에 5年이상 근무한 者

2. 大學에서 行政學·政治學 또
는 法律學을 담당한 副教授
이상의 職에 5年이상 근무한
者

3. 3級이상 公務員으로서 2年이
상 근무한 者

第9條(委員의 解任事由) 各級選舉

第9條(委員의 解任事由) -----

管理委員會의 委員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할 때가 아니면 解任・解囑 또는 罷免되지 아니한다. 1. ~ 4. (생략) 5. <u>市・道選舉管理委員會의 常任委員인 委員으로서 國家公務員法 第33條 各號의 1에 해당하거나 常任委員으로서의 勤務上限에 달하였을 때</u> 第12條(委員의 待遇) ① (생략) ② <u>中央選舉管理委員會의 常任委員은 政務職으로 하고 그 보수는 國務委員의 보수와 동액으로 하며, 市・道選舉管理委員會의 常任委員은 1급인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u> ③ (생략)	----- ----- ----- ---. 1. ~ 4. (현행과 같음) 5. <u>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으로</u>----- -----<u>해당</u> <u>한</u>--- 第12條(委員의 待遇) ① (현행과 같음) <u><삭제></u> ③ (현행과 같음)
--	---